

(參 照)

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976
------------	-----

2000. 9. 22.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(대통령령 16,879호 - 2000 7. 1) 에 따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며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조정하여 직무의 공백을 없애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기하고 의회기능을 강화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동 조례 제2조 제2항에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며
- 동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중 “성남시 문화정보센터”를 “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”, “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”로 개정하고

- 동 조례 제9조 제5항에 규정에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동 조례 제25조를 신설하여 50만원 ~ 500만원으로 절차 및 위반 행위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

3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(2000. 7. 1)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며
-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요구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4호에 부과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 조례 제25조를 신설하여 과태료를 절차 및 위반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부과토록 규정하므로써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